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병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5.

발 의 자 : 김병주 · 유용원 · 어기구
박용갑 · 허성무 · 김태선
김성희 · 이언주 · 황명선
김소희 · 이달희 · 강준현
김상훈 · 민병덕 · 김예지
김태호 · 김의겸 의원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방위산업 수출계약은 완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방과학기술의 이전과 수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창정비, 부품공급 등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, 구매국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후속군수지원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. 그럼에도 현행법은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수출산업협력 지원 조치에 이러한 후속군수지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방산기업의 수주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,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을 방위사업청장이 방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조치에 추가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제9호의2,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).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
에 관한 사항

제1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의 수립) ① (생 략)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0. (생 략) ③ ~ ⑦ (생 략)	제5조(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 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9의2.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후속군수지원 등 수출산업협 력 지원에 관한 사항</u> 10. (현행과 같음)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수출산업협력 지원) ① 방 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출산업협력을 하는 방산업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제16조(수출산업협력 지원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4. 구매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 른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</u> ② (현행과 같음)